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970호)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5. 26.
나. 회부일자 : 2006. 5. 26.
다. 상정의결일자 : 2006. 6. 7.

고 성 군 수

2. 제정이유

-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안 제 2 조)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 3조)
다.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 (안 제5조)
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 경비 자급.(안 제8조)
바. 기존의 「고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6-316호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나.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내지 제72조
※ 행정자치부 및 경남도 표준안 시달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도입, 교부세율 인상, 분권교부세 신설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운영중인 재정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하고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이었습니다.
-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안의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위원회 구성)안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위원회 구성)안의 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범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 문 : 위원회 통합운영부분이 운영조례안을 만들어가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다시 운영을 할 때는 뭔가 새로운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제도의 재정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위원회 구성관계는 2조의 위원회는 학계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선거직공무원과 그 다음에 임용직공무원 두 가지로 광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직 선출되신 공무원도 선거직공무원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통합관계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군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지며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제시한 세입세출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제한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공시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 문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역할이 서로 배치되는 그런 것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서로가 견제하거나 이런 역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해 버리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답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기능이 되어 있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은 재정공시제도 운영관련 공시방법내용 등을 심의하고 특수공시사항 선정 방법절차 등을 심의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것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고성군재정 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문 :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안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기에 따른 명확한 어떤 의결사항이라든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더라 해도 부위원장은 적어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직이 과연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고 통합운영한다는 이 부분이 의결자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능도 서로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 답 :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도내에서 당초 표준안 내려오면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도내에 20개 시군에서 단 2개 시군만 바꾸어지고 거의가 기획감사실장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군의원님들이 다 들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호선해서 부위원장은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 : 통합운영한다면 한 가지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운영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통합 안한다고 하면 공시할 부분만 나타나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그외 부의하는 안이 있으면 우리 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시 안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 답 :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통합운영관계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하는 것이 말이 안맞지 않느냐고 도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문 : 위원회의 재정공시심의는 일단 재정상태를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위원회 구성으로 봐도 학계,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재정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많이 공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것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또 행정주도적인 입장에서 심의도 하지만 실제로 군수가 위촉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안을 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개하는 부분을 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역할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을 통합 운영해 버리면 제도를 만든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공시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서로가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을 때 통합하는 그런 절차도 거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 답 : 잘 알겠습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6.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